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안전연구센터장

들어가며

작년 초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운동(#MeToo movement)’은 문화예술계,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로 확대되었다. 스포츠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시작의 중심에는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미투가 있었다. 심 선수의 용기와 결단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제자에 대한 스승의 단순 상습 폭행 사건으로 치부되었을 것이고, 신유용 전 유도선수의 미투로도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두 선수의 작은 외침은 ‘한국판 나사르 사태!’를 연상케 할 정도로 스포츠계를 비롯한 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 충격은 과거에도 있었다. 이번 사건으

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2007년에 있었던 우리은행 여자 프로농구팀 감독의 여성선수 성추행 사건이다. 그해 4월 미국 전지훈련 중에 발생한 이 사건은 스포츠계가 성폭력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외부와 소통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성폭력의 문제를 위계적 구조 안에서 엄밀히 은폐시키고 감독 개인의 사적인 이탈행위로 결론 짓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없었고 그녀의 인권은 처참히 짓밟혔다(문화연대·체육시민연대·한국여성민우회 기자회견자료 2007.6.29²⁾). 그녀 또한 심 선수와 같이 위계적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임을 명확히 하면서, 스스로 용기 내었던 사건이다.

이듬해 초 KBS는 그 당시 <시사기획 짬>이라는

1) 미국 국가대표 체조팀 주치의이자 미국 미시간주립대 교수로 재직했던 래리 나사르(Larry Nassar)가 20년 이상 368명의 어린 여성 체조 선수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하였고, 2016년 9월에서야 용기 있는 피해자의 미투로 세상에 알려진 사건임. Wikipedia 홈페이지 참고, USA Gymnastics sex abuse scandal, https://en.wikipedia.org/wiki/USA_Gymnastics_sex_abuse_scandal (접속일: 2019.3.6)
2) 문화연대, 체육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기자회견(2007.6.29). 우리은행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 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15176 (접속일: 2019.3.6.)

프로에서 미성년자부터 성인 선수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종목에 관계없이 자행되고 있는 스포츠 성폭력의 문제가 은폐되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을 취재한 '2008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 보고서'를 보도하였다(KBS 보도자료, 2008.2.11., 2008.3.17.)³⁾. 이를 실제 보도한 정재용 기자의 최근 인터뷰에서 지나쳐서는 안될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그 당시 스포츠계의 폭력을 심층적으로 취재하는 과정에서 들어난 것은 단순 폭력이 아닌 성에 기반한 폭력, 바로 성폭력의 문제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 둘째는 거의 전 종목에 걸쳐 취재하면서 너무 (성폭력 피해) 케이스가 많아 도저히 취재할 수 없는 지경으로 성폭력이 스포츠계에서 일상적인 현상이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성폭력은 스포츠계의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발생한다는 점이 그것이었다(오마이뉴스 2019.1.19.)⁴⁾.

이번 심석희 선수의 미투 과정에서 확인된 것도 지난 12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언어적·신체적 폭력이 성에 기반한 폭력으로 이어졌고, 또한 그것(성폭력)은 훈련 장소나 관련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빈번히 발생되었다. 이렇게 성폭력이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뿌리 뽑히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데는 스포츠계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관행과 문화가 있었다. 이러한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성폭력이 기인되어 지금도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고 본다.

본 원고에서는 최근 스포츠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⁵⁾⁶⁾하여, 성폭력 피해가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선수생활 전 영역에서 피해가 지속되고 일상적인지, 그리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 미투 이후 쏟아져 나온 정부의 주요 대책을 소개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였다.

스포츠 성폭력 실태

스포츠계의 성폭력 실태는 최근에 실시된 「프로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로 살펴보았다. 총 639명의 프로선수들이 조사에 참여하였는데, 이들 중 프로입단 이후 성폭력⁷⁾을 경험한 경우는 15.9%이었다. 그런데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험률은 37.7%로 남성 5.8%에 비해 6.5배 높았다. 그 만큼, 타 분야와 같이 스포츠 분야에서도 여성은 성적 대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결과를 중심으로 성폭력 유형별 경험률을 보면, 언어적 성희롱(31.8%), 시각적 성희롱(22.7%), 육체적 성희롱/기타(각 12.3%) 순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육체적 성희롱은 성추행과 강간 및 강간미수로 구성되는데, 후자인 강간 및 강간미수가 4.5%p를 차지한다. 이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또한 선수들은 종종 관객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폭력을 경험하곤 하는데, 온

3) KBS 홈페이지. 2008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보고서 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1507936>; 2008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보고서 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1527872> (접속일: 2019.3.6.)

4) 오마이뉴스 보도자료(2019.1.19.).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_m.aspx?CNTN_CD=A0002505162#cb (접속일: 2019.3.6.)

5) 여기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의뢰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선수 결과를 근거로 함. 조사 대상자의 특성과 종목(야구, 축구, 배구, 농구, 골프) 및 조사방법, 성폭력의 정의 및 개념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6) 김동식, 윤덕경, 이미정, 동재연, 천재영, 정다은 (2019).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

7) 본 조사에서의 성폭력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하여, 언어적, 시각적, 육체적 성희롱 및 기타에 해당되는 15가지 행위와 온라인 성범죄 및 불법촬영 행위, 총 17가지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함(김동식 외, 2019: 84-85).

〈표 1〉 프로입단 이전과 이후, 최근 1년 성폭력 피해 경험 및 목격 혹은 들었던 경험

(단위: 명, %)

구분	프로 입단 이전			프로 입단 이후			최근 1년 ¹⁾			프로 입단 이후 목격 또는 들은 경험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639	436	203	639	436	203	557	372	186	639	436	203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비율	21.9	11.9	43.5	15.9	5.8	37.7	4.9	1.7	11.3	12.8	6.1	27.3
(1) 언어적 성희롱(%)	19.1	9.9	39.0	13.5	4.9	31.8	3.5	1.4	7.8	10.8	4.6	24.0
(2) 시각적 성희롱(%)	14.0	6.1	31.2	8.4	1.7	22.7	2.3	1.0	5.0	8.2	3.2	18.8
(3) 기타 성희롱(%)	6.7	2.6	15.6	4.3	0.6	12.3	0.9	0.0	2.8	6.5	1.7	16.9
(4) 육체적 성희롱(%) ²⁾	9.2	2.9	22.7	4.7	1.2	12.3	1.6	0.7	3.5	5.9	1.2	16.2
- 강간 혹은 강간미수	2.7	0.6	7.1	1.6	0.3	4.5	0.2	0.0	0.7	3.1	0.3	9.1
(5) 온라인 성범죄 및 불법촬영(%)	1.6	1.2	2.6	1.0	0.0	3.2	0.2	0.0	0.7	2.2	0.9	5.2

주: 1) 프로입문 1년 미만자(82명)는 '최근 1년 피해 경험' 응답 제외

라인이나 불법촬영에 의한 성범죄도 해당된다. 본 조사에서는 여성의 3.2%가 이런 신종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 시기를 최근 1년으로 좁혔을 때에도, 여성의 11.7%는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남성 중 피해 경험자가 1.7%인 것과 비교하면, 여성의 성폭력 피해율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작년 초 미투가 시작된 이후인 9~10월에 실시된 것을 고려한다면, 이 수치도 다소 과소 추정된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프로입단 이전인 아마추어 시기, 이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어느 정도 될까? 바로 결과를 얘기하면, 21.9%가 프로입단 이전에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프로입단 이후의 피해 경험률인 15.9% 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이 또한 성별 간 큰 격차를 보이는데, 남성은 피해 경험률이 11.9%인데 반해 여성은 이보다 약 3.7배 높은 43.5%이었다. 성추행과 강간 및 강간미

수가 포함된 육체적 성희롱만 보더라도 피해 경험률은 9.2%이며, 여성만 보면 22.7%이다.

한편, 프로입단 이후 주변 선수들이 성폭력 피해를 겪는 것을 직접 목격했거나 들었던 적이 있는지를 보더라도, 실제 피해 경험 비율과 비슷한 12.8%가 있었던 것으로 실태조사결과에서 보고한다. 이 역시도 여성선수의 응답(27.3%)이 남성(6.1%)에 비해 4.5배 많았다.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대체로 숨기고 주변에는 알리는 것을 꺼려한다. 알리더라도 주로 자신과 같은 동성에게 알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스포츠계의 성폭력 대상이 주로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스포츠 성폭력의 지속화 및 일상화⁸⁾

앞서 프로입단 이전과 이후, 그리고 최근 1년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8) 여기서의 결과는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도출한 것임

이를 교차하여 스포츠계의 성폭력이 어느 정도 ‘지속화’ 되고 ‘일상화’ 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속화’는 프로입단 이전의 피해 경험이 프로입단 이후로도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일상화’는 선수 경력과는 무관하게 모든 선수들에서 피해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이다.

우선 지속화 측면에서 보면, 프로입단 이전 성폭력 피해 경험자는 140명(전체의 21.9%)으로, 이 중 60.4%는 프로입단 이후에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지속성을 보이는 피해자(입단 이전과 이후 모두 피해를 입은) 비율이 70.1%였다. 최근 1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20.3%

는 프로입단 이후에도 피해를 경험하였다. 여기서도 남성은 13.5%, 여성은 24.2%로 성별 간 격차가 확인된다.

이어서 일상화 측면에서 보면, 프로입단 이전 성폭력 피해 경험자 중에서 프로입단 이후의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55.7%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과반 이상이 프로에 입단한지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성폭력을 경험한 것이다. 이는 선수경력 1~3년미만(50.3%)과 3~5년 미만(50.0%)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경력이 높다고 성폭력 피해율이 낮은 것은 아니다. 5년 이상 경력에서도 성폭력 경험율은 5년 미만 보다 더 낮지 않다.

〈표 2〉 프로입단 이전 성폭력 피해 경험자 중 프로입단 이후 및 최근 1년 피해 경험 현황

(단위: 명, %)

구분		프로입단 이전 성폭력 피해 경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합계
전체(명)		85	55	140
프로입단 이후 성폭력 피해 경험율(%)		60.4	39.6	140
성별	남성	43.9	56.1	52
	여성	70.1	29.9	88
경력기간	1년 미만	55.7	44.3	12
	1-3년 미만	50.3	49.7	21
	3-5년 미만	50.0	50.0	16
	5-10년 미만	60.0	40.0	32
	10-15년 미만	91.0	9.0	29
	15-20년 미만	50.5	49.5	10
	20년 이상	44.2	55.8	21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 경험율(%)		20.3	79.7	128
성별	남성	13.5	86.5	46
	여성	24.2	75.8	82
경력기간(1)	1-3년 미만	18.8	81.2	21
	3-5년 미만	33.6	66.4	16
	5-10년 미만	7.8	92.2	32
	10-15년 미만	31.9	68.1	29
	15-20년 미만	25.5	74.5	10
	20년 이상	12.5	87.5	21

주: 1) 프로입문 1년 미만자(82명)는 ‘최근 1년 피해 경험’ 응답 제외

오히려 더 높다. 이를테면, 경력이 5~10년은 60.0%, 10~15년 미만은 91.0%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경력이 20년 이상에서도 피해 경험율은 44.2%이다. 최근 1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양상은 비슷하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프로입단 이후 선수생활을 길게 하였든, 짧게 하였든 무관하게 성폭력의 대상인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만큼 성폭력이 스포츠계에서 일상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가 일회성으로 특정 시기에 겪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반복적⁹⁾이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¹⁰⁾.

스포츠 성폭력의 원인

그렇다면 스포츠계 성폭력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를 논하기에 앞서 실태조사에서 그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는 성폭력의 행위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



〈언어·시각·기타 성희롱 가해자〉

다.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선수들에게 행위자를 물어본 결과(중복응답), ‘소속팀 코칭스태프’와 ‘소속팀 선배 선수’라는 응답이 70% 이상이었다. 일반 선수들에게 이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들 보다는 응답률이 낮지만, ‘연맹/구단 관계자’와 ‘후원사 관계자’도 중요한 성폭력 행위자로 확인된다. 프로 선수들에게 있어 이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에 더하여 행위자의 성별을 보면 80% 가까이가 남성이고, 15%는 남녀 모두, 나머지 5% 정도는 여성이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는 성폭력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대응’은 피해 당시(즉시)와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피해 당시의 대응을 보면, 언어적·시각적 성희롱인지 혹은 육체적 성희롱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그냥 웃거나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아무런 말이나 행동(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3.2%가 있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그냥 웃거나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응답은 4.0% 수준이며, ‘아무런 말이나



〈육체적 성희롱 가해자〉

[그림 1] 성폭력 행위자와의 관계

9) 프로입단 이후 언어적·시각적 및 기타 성희롱 경험자 중 단 1회만 피해를 겪은 경우는 17.6%이지만, 2~3회는 41.2%, 4~5회는 11.8%, 6~9회는 8.8%, 그리고 10회 이상은 20.6%임(김동식 외, 2019: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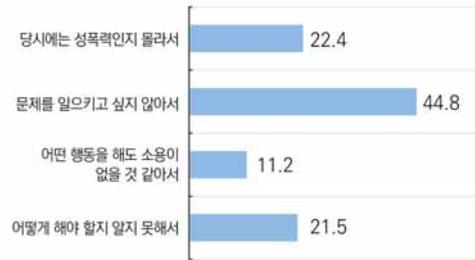
10) 성폭력 발생장소를 보면, 언어적·시각적 및 기타 성희롱은 주로 ‘화식자리’이거나 ‘훈련장’이며, 이외에도 ‘경기장’이나 ‘합숙소’, ‘전지훈련 숙소’ 및 ‘이동차량’인 경우도 많고, 성추행과 강강 및 강간미수가 포함된 육체적 성희롱은 주로 ‘운동부실’과 ‘지도자실(지도자 숙소 포함)’인 경우가 많음(김동식 외, 2019: 93, 105).



〈언어시각기타 성희롱 피해 당시 대응〉



〈육체적 성희롱 피해 당시 대응〉



〈피해 당시 아무런 행동 하지 않은 이유〉



〈피해 당시 아무런 행동 하지 않은 이유〉

〔그림 2〕 성폭력 피해 당시 대응 및 아무런 행동(저항)을 하지 않은 이유

행동(저항)을 하지 않았다'가 27.9%, '얼굴을 찡그리는 등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했다'도 40.2%가 응답했다. 이 결과를 보면, 대체로 그냥 웃어넘기거나 아무런 행동(저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행동을 하더라도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아무런 말이나 행동(저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또한 성폭력 유형에 따라 소폭의 차이가 있고, '성폭력이었는지 몰랐다'라는 응답도 있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가 응답의 과반 이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응답은 거의 모두가 여성이라는 점이다.

이어서 성폭력 피해 이후 대응으로서 내·외부 신고에 관한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외부기관 신고는 전혀 없었고, 내부기관 신고만 4.5%가 있었다. '내·외부 기관에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주변 동

료 및 지도자에게는 알렸다'는 응답은 28.2%, 나머지 67.4%는 '내·외부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주변 동료 및 지도자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왜 피해 선수들은 내·외부 어디든, 그리고 동료 및 지도자에게 신고하거나 알리지 않았을까? 조사 결과(중복응답)를 보면, 피해자의 과반수가 넘는 52.3%는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이 다음으로 34.7%가 응답한 이유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다들 가만히 있으니'였다. 이외에도 여러 이유들이 있었는데, '수치스러운 일이어서(24.1%)',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21.8%)', '성폭력인지 몰라서(17.4%)',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17.3%)' 등이 있었다. 이들 이유를 통해 스포츠계의 성폭력은 내부 구조적인 문제, 신고체계 부재의 문제, 관련 예방교육 부족/부재¹¹⁾ 및 인식 부족의



[그림 3] 성폭력 피해 이후 내외부 기관 신고 및 동료·지도자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

문제 등과 연관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가 내외부 혹은 주변 동료·지도자에게 신고 혹은 알린 이후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먼저 피해 신고 이후 조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내부기관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6.7%로 2/3를 차지한다. 이런 것이 앞서 살펴본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 있다. 이어서 피해 신고 혹은 주변인에게 알린 이후의 피해자 상황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내부 신고자의 2/3는 내부기관에서 ‘사건피해자(피해자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조사 시 부적절한 질문이나 태도를 보였다’, ‘가해자를 옹호하는 의견이나 행위를 보였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나 합의를 중용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1/3은 ‘성폭력 사건 접수 또는 조사 내용을 유포하

였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였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등과 같이 오히려 2차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비록 내부기관에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동료나 지도자에게 알렸을 때도 그 과정에서 20~30% 정도는 2차 피해를 겪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테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헐담이나 비난 여론을 만들었다(31.9%)’, ‘동료 등 조직구성원이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지적했다(27.3%)’, ‘동료 등 조직구성원이 가해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했다(22.8%)’ 등의 2차 피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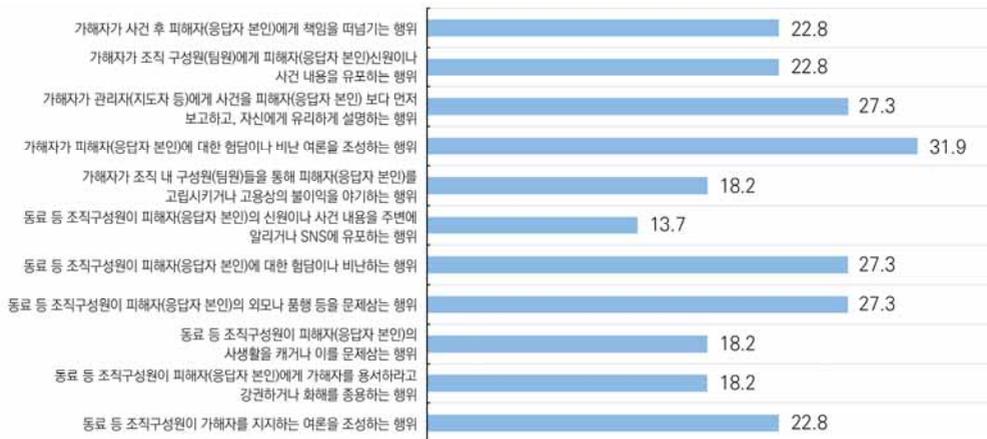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스포츠계의 성폭력 행위자가 지닌 절대적인 위치와 권력, 그리고 스포츠계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과 피해자 비친화적 사건처리(2차 피해 등) 등이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무대응 혹은 소극적 대응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²⁾.

11) 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7.6%에 불과했음(김동식 외, 2019: 121)

12) 이는 실태조사에서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에서도 확인되는데, 선수로서 경력유지에 불이익, 상명하복의 엄격한 문화, 소속팀·구단의 이미지 차원에서의 사건 은폐와 회유 등이 있었음(김동식 외, 2019: 125-126).



〈내외부 기관 신고 후 2차 피해〉



〈동료 및 지도자에게 알린 후 2차 피해〉

[그림 4] 성폭력 피해 이후 내외부 기관 신고 및 동료·지도자 알린 이후 2차 피해

스포츠계 성폭력 근절대책과 우려

이번 스포츠계 미투 이후 1~2월 사이에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표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된 내용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률적·의료적 지원 등)와 행위자 처벌, 성폭력 예방교육의 의무화 및 여성지도자 육성과 고용, 그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센터 설치·운영 등이 있다. 같은 기간 범정부차원에서도 스포츠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러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와 운영이다. 특조단은 스포츠계 성폭

력에 관한 피해 접수 및 피해사안에 대한 치유 지원과 가해행위 진상조사, 성폭력 발생상황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대한체육회 등 스포츠단체의 인권현황 등에 대해서 조사 기능과 조직 진단,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도적 권고를 하게 된다. 또 다른 것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운영이다. 이 혁신위는 스포츠계 구조 혁신을 위한 필요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 권고 및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스포츠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스포츠계에 많은 도전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의 대책도 땀

〈표 3〉 스포츠계 미투 이후 의원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2019.1.~2)

구분	개정안 조문
안민석 의원 외 18인 (2019.1.10.)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3항 ‘연구과정에는 폭력방지 및 예방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자격사유) 제4호 집행유예 면제 대상,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남인순 의원 외 10인 (2019.1.11.)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 등)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11조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포함해야 한다’ - 제11조2(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2항 ‘부정이나 비위’를 ‘성희롱·성폭력이나 부정·비위’로 수정 -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제6항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센터는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법률지원, 심리치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14조의2(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 방임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거나 그 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 제14조의3(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 제33조(통합체육회),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6.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안민석 의원 외 18인 (2019.1.11.)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5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1항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2. 스포츠비리·인권침해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요구, 3. 스포츠비리·부정 예방 및 윤리 교육, 4.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과 징계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등.
이동섭 외 13인 (2019.1.25.) 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4항 ‘체육지도자는 스포츠 비리/부정 예방 등에 관한 윤리교육 및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인권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4. ‘선수에 대하여 성폭력, 성희롱, 폭행 또는 상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14조의4(스포츠 비리, 성폭력·성희롱 및 폭력 범죄의 예방 및 방지조치) 1항 ‘체육인에 대한 승부조작, 입시비리, 조직사유화 등의 스포츠 비리·부정, 성폭력·성희롱 및 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2항 ‘성폭력 등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 비리·부정 예방 등에 관한 윤리교육 및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등의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의5(피해 선수 등의 상담 및 치료) 1항 ‘국가는 성폭력 등의 피해선수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11.3. 성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11의4 성폭력 등 예방 및 피해구제 활동과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제35조의3(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의 설치·운영) 1. 스포츠 관련 분쟁의 조정·중재, 2. 성폭력등에 관한 징계양형기준 구축, 3. 스포츠 비리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중략) 8.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현황과 징계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제42조의2(체육회 등의 여성체육지도자 우선 채용) 체육회, 장인인체육회, 경기단체의 장은 여성 경기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여성 체육지도자가 지도할 수 있도록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 제55조(과태료)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표 3〉 계속

구분	개정안 조문
권미혁 외 10인 (2019.1.29) ⁵⁾	- 제14조의4(성폭력·성희롱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성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유승희 외 10인 (2019.2.26) ⁶⁾	- 제10조의2(여성 체육지도자의 고용)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체육지도자를 두는 경우 여성 체육지도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항, '위의 단체를 두는 체육지도자의 100분의 30이상이 여성 체육지도자가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윤종필 외 10인 (2019.2.26) ⁷⁾	- 제10조의2(체육인권보호관) '체육인에 대한 폭력 및 성희롱/성폭력의 방지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인권보호관을 둔다', '이 보호관은 체육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침해 의심사례 관련 현장조사, 제도개선 권고, 상담 및 조언'

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 1) 안민석, 심재권, 이동섭, 최경환, 김수민, 신창현, 염동열, 권미혁, 임종성, 이용득, 김영주, 민병두, 노웅래, 이상민, 윤준호, 이개호, 박광운, 서삼석, 박정 (2019.1.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 2) 남인순, 김해영, 서용교, 기동민, 김상희, 신창현, 김현권, 송옥주, 송갑석, 권미혁, 박주민 (2019.1.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3) 안민석, 심재권, 이동섭, 최경환, 김수민, 신창현, 염동열, 권미혁, 임종성, 이용득, 김영주, 민병두, 노웅래, 이상민, 윤준호, 이개호, 서삼석, 박정 (2019.1.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 4) 이동섭, 김수민, 박주선, 임재훈, 김동철, 주승용, 이찬열, 신용현, 권은희, 지상욱, 유의동, 최도자, 김관영, 채이배 (2019.1.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대표발의)
- 5) 권미혁, 김영주, 남인순, 최재성, 김병관, 박찬대, 김병기, 송옥주, 유승희, 김병욱, 고용진 (2019.1.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
- 6) 유승희, 김경협, 박재호, 백재현, 서영교, 송영길, 송옥주, 심상정, 윤후덕, 이석현, 한정애 (2019.2.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 7) 윤종필, 원유철, 박덕흠, 정우택, 이종배, 김경진, 임이자, 성일종, 정태욱, 박명재, 황주홍 (2019.2.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대표발의)

질식에 불과하며, 스포츠계 전반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는 지난 12년 전 미투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제안된 정책과제(황정임 외, 2007: 85-91)¹³⁾ 와도 크게 다르지 않고, 또한 그 이후 스포츠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인권가이드라인 배포와 기구 설치 등 다각적인 대책들이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다.

나가며

분명 이번 대책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기에, 스포츠계 성폭력 근절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이런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스포츠계의 구조적 문제와 그로 인한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젠더 관점이다. 그 배경에는 이번 심석희 선수 사건을 비롯한 과거 유사 사건들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스포츠계 성폭력에 대한 낮은 젠더 감수성과 지도자가 갖는 절대적인 제왕적 권력 및 스포츠계의 뿌리 깊은 연줄주의와 서열화된 문화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

13) 황정임, 선보영, 허현미 (2007). 프로스포츠팀과 직장운동부의 여성선수 권익실태 조사. 문화관광부

이다. 이 근원에는 엘리트 스포츠가 있다. 이것이 꼭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선순환이 된다면 말이다. 그러나 지금껏 성폭력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늘 같은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음을 방증한다. 성적만능주의, 승리지상주의는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를 가리고 관대한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한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스포츠계가 지

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혁신적 개혁을 강하게 요구 받고 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스포츠계의 성폭력에서 용기 있는 작은 울림(미투)이 헛되지 않도록, 과거의 악습과 잘못된 관행은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시 공정하고 평등한 스포츠 정의(sports justice)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